

知(的)所(有)權(紛)爭(事)例

포스턴交響樂團指揮者傳記事件

—公的人物肖像에 權威權有限—

<1947年 뉴욕州地法判決>

1. 原告 : 쿠제비키

(포스턴交響樂團指揮者)

2. 被告 : 出版社

3. 事件概要

2次大戰 前後 포스턴交響樂團에 쿠제비키라는 指揮者가 있었으며 어느 出版社가 쿠제비키의 承諾없이 그의 傳記를 出版하려 하였으나 原告에 의해 出版中止訴가 提起되었다.

원고의 主張인 즉 自己의 聲譽가 그의 寫眞이 카버나 出版物中에 使用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自己의 生涯와 音樂生活에 대하여 誤記뿐 아니라 잘못 描寫되어 있다. 더욱이 異議있는 個所, 眞實이 아닌 部分, 虛構, 名譽毀損의 部分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 原因을 根據로 뉴욕州 市民權法50條, 51條의 權威條項을 들어 出版中止命을 申請하기 에 이른 것이다.

4. 判決要旨

公的人物이건 아니건 간에 뉴스의 主題가 되는 人物에 權威의 適用은 없다. 嚴密한 뉴스가 아니라도 知識을 주는 것과 教育的인 것에 대하여 生存하고 있는 人物의 姓名이나 肖像을 使用하는 데에 權威權의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출판에서 초상과 사진은 主題와 關聯하게 되면 그 사용이 正當化되고 또 초상과 姓名을 使用하는 것은 若干의 正當한 公的利益을 保

有하게 된다.

원고는 重要한 公的人物이고 그의 音樂家로서의 顯著한 功績때문에 恒常 公衆의 눈에 띄고 있으며 그의 一生은 一般의 關心事이다.

權威條項은 公的人物의 傳記를 만들 때 그 人物의 性格上 虛構가 있고 小說化하였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提訴된 冊은 전혀 허구의 것은 아니며 진실되지 않은 敘述이 包含되어 있어도 虛構의 分類에는 들 수가 없다. D. Altomonte v. New York Herald Co事件에서도 高法은 50條 및 51條下에서는 원고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 虛偽的인 이야기 거리는 원고에 起因한 것일지라도 起訴原因은 되지않는다고 判示했다.

著者가 가리킨대로 쿠제비키는 自己生活을 위하여 房을 갖지 않고 음악과 그의 誠實한 아내와 協力者에의 獻身이 있을 뿐이었다. 同時代의 事實敘述에는 몇가지 誤謬가 있어 信賴性이 缺如된 점도 있다.

이 책에 포함된 事實은 원고가 지휘자로서 勝利者였음을 證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휘자로서의 일이 항상 優雅하고 明朗한 雰圍氣에 찬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으나 이를 著者는 讀者에게 밝히며 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가 원고의 音樂史位置와 評價에 冷酷하였다. 따라서 원

고가 극히 感受性이 鋭敏하였다면 不快感을 느끼게 될 敘述이 있고 또 원고는 名譽毀損의인 部分을 證明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의 寬容을 窺함을 念慮가 있을 만한 점을 仔細히 公開하지는 않았으며 節度의 感覺에 反하지도 않았고 또 一般의 關心의 對象이 될 情報를 正當하게 擴散시키는 範圍를 넘을 만한 것도 없다. 따라서 被告의 전기책은 市民權法50條와 51條에 該當되지 않는다. 또 若干의 잘못이 있다 해도 社會의 良識의 範圍內이며 肖像權의 問題에 關聯하여 公的人物의 사진을 入手한 자는 新聞, 雜誌, 書籍에 複寫할 權利가 있을 뿐 아니라 契約不履行이나 不法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決하였다.

에너지는
國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